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 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26. 7. 1.)인 바, 산업인공지능 활용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시행령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 산업인공지능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 활용 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
- 다.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과 활용 수준에 대한 진단 기준·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 ~ 5. 1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중

대통령령 제 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4. 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 설비·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 관리
6. 제품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7. 위험요인 식별 등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8. 그 밖에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의 제목“(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산업”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으로, “전환 선도사업”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환 관련”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 추진실적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의 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등 활용 역량
2. 산업인공지능 관련 인증 및 특허 등 보유 현황
3. 산업인공지능 관련 보안기술의 수준
4.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설비·장비,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

5. 산업인공지능의 공정, 제품, 서비스 등 산업현장 적용 범위 및 업무 혁신 성과

6. 그 밖에 진단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중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를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활용위원회”)”로, “전환위원회 위원장”을 “활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환위원회”를 각각 “활용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6항 중 “전환위원회”를 “활용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을“(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위원회”를 “활용위원회”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을“(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각각 “선도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위원회”를 각각 “활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각각 “선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환위원회”를 각각 “활용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 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목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를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 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제11조제3항부터 5항 중 “협업지원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전문인력”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위원회”를 “활용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전환 지원 전문회사”를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환 촉진 및 지원”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전환을”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신설>	제2조의2(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장비 또는 시스템 등

	의 자동화 및 제어
	4. 제품의 결합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 설비·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6. 제품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7. 위험요인 식별 등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8. 그 밖에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 -- 2. ----- 전환 및 인공지능

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u>능 활용</u> -----
3. 산업 디지털 <u>전환</u> 관련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 ----- -----.
1. 산업 디지털 <u>전환</u> 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1.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
2. 산업 디지털 <u>전환</u> 추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 ----- ----- -----.
1. 산업 디지털 <u>전환</u>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 <u>전환기업</u> 등”이라 한다)의 산업 디지털 <u>전환</u> 에 대한 인식 및 산업 디지털 <u>전환</u> 추진에 관한 사항	1.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u> ----- ----- <u>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 추진실적 등</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산업 디지털 <u>전환</u> 관련 연구	4. ----- <u>전환 및 인공지능</u>

· 개발에 관한 사항	<u>능 활용</u> -----
5. 산업 디지털 <u>전환</u> 전문인력 현황과 그 양성에 관한 사항	5.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6. 산업 디지털 <u>전환</u> 관련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u>전환</u>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 -----
<신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의 진단(이하 “ <u>진단</u> ”이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등 활용 역량
	2. 산업인공지능 관련 인증 및 특허 등 보유 현황
	3. 산업인공지능 관련 보안기술의 수준
	4.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설비·장비,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
	5. 산업인공지능의 공정, 제품, 서비스 등 산업현장 적용 범

의 선정)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u>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 4. (생 략)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u>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u>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u>전환위원회</u>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1.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타당성</u> 2.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u> 3. 참여하는 전환기업등이 보유	<u>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u>)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선도사업</u>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u>선도사업</u> ----- ----- <u>선도사업 계획서</u> ----- ----- ④ ----- <u>활용위원회</u> ----- ----- <u>제출한</u> ----- ----- 1. <u>선도사업의 타당성</u> 2. <u>선도사업</u> ----- ----- 3. -----	한 기술·인력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4.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u>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8조(<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u>)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활동 2.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4.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및 인증 획득 5. (생 략) 6. 그 밖에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u>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등 ----- ----- ----- 4. <u>선도사업</u> ----- ----- 제8조(<u>선도사업에 대한 지원</u>) ① ----- ----- ----- ----- 1.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2.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 3.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 4.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 5. (현행과 같음) 6. ----- <u>선도사업</u>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u> 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④ ----- ----- ----- <u>선도사업</u> ----- ----- -----.
⑤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u> 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⑤ <u>선도사업</u> -----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규제개선 지원 등) ① <u>전환위원회</u> 는 법 제17조제2항 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규제개선 지원 등) ① <u>활용위원회</u> ----- ----- ----- ----- ----- -----.
② <u>전환위원회</u> 또는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u>활용위원회</u> ----- ----- ----- ----- -----.
③ <u>전환위원회</u> 는 법 제17조제4	③ <u>활용위원회</u> -----

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
1.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1. ----- -----
2.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 <u>통한</u> ----- -----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3. ----- -----
4. 그 밖에 <u>전환위원회</u>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u>활용위원회</u> ----- -----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u>전환위원회</u> 에 통보해야 한다.	④ ----- ----- ----- ----- ----- <u>활용위원회</u> -----.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u>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u> 을 하는 전환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 ----- <u>선도사업</u> ----- ----- ----- -----

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 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전환기업등이 요 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 ----- ----. ----- ----- ----- ----- ----- ----- -----.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 원센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기 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 활용지원센터) ①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1. ----- ----- -----
가.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 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가. ----- 전환 및 인공 지능 활용 ----- ---
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 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나. ----- 전환 및 인공 지능 활용 관련 분야-----

후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 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환 및 인공지 능 활용 관련 법인----- -----
다.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 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 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람	다. ----- 전환 및 인공 지능 활용 관련 분야----- ----- ----- ----- ----- 전환 및 인 공지능 활용 관련 법인--- ----- -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를 갖추어 것	2. -----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 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 따른 산업 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 센터(이하 “센터”----- ----- -----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업지원센 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③ ----- ----- 센터를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u>협업지원 센터</u> 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 센터의 ----- -----,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u>협업지원센터</u> 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 센터 ----- -----, -----.
⑤ <u>협업지원센터</u> 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센터 ----- -----.
1. 산업 디지털 <u>전환</u> 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지원	1.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
2. 산업 디지털 <u>전환</u> 선도사업 지원	2. 선도사업 지원
3. 산업 디지털 <u>전환</u> 관련 기업·기술·인력 등 정보 제공	3.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4. 산업 디지털 <u>전환</u> 을 위한 상담·자문	4.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5. 산업 디지털 <u>전환</u>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6. 산업데이터 표준화 지원	6. -----
7.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7. -----
8.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관한 지원	8. -----
9. 산업 디지털 <u>전환</u> 전문회사	9. ----- 전환 및 인공지능 -----

지원	능 활용 ----- -----
10. 산업 디지털 <u>전환</u>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11. 그 밖에 산업 디지털 <u>전환</u> 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1.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제12조(산업 디지털 <u>전환</u>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u>전환</u>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산업 디지털 <u>전환</u>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산업 디지털 <u>전환</u>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1.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u>전환</u>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1. <u>전문인력</u> 양성 계획	1. <u>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전문인력</u> 양성에 필요한 시 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 <u>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u>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u>전환</u> 전 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 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국제협력 등) ----- ----- ----- -----.
1. 산업 디지털 <u>전환</u> 분야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 교환	1.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
2. 산업 디지털 <u>전환</u> 에 관한 전 사회·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2.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u>전환</u> 에	3. ----- <u>전환 및</u>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산 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인공지능 활용</u> ----- -----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 ----- ----- -----.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u>전환</u>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1.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u> --
2. <u>전환위원회</u> 운영 지원	2. <u>활용위원회</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u>전환</u> 지원 <u>전문회사</u> 지원	4. <u>법 제11조제1항</u> -----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 사”라 한다)의</u> ----- --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u>전환</u> 촉진 및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5. ----- <u>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u> ----- -----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④ ----- -----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상호 협력 촉진	1.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2.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3.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인력 양성	3.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4.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4.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	5.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2. ----- -----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835